

여호와와 증인 종교단체가 탈퇴자들에게 시행해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에 반하는) 가족단절 규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 어떤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100% 명백한 종교의 자유이며, 100%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 . 어떤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인생의 긴 행로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너무도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입니다.
- . 종교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가족단절과 같은 고통과 제약을 가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은 100% 명백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위반이며,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의 침해이며, 비인도적이고 인권에 반하고 극단적이고 잔인하며 유엔자유권협약에도 반합니다.
- . 탈퇴자에게 가하는 가족단절과 같은 인권에 반하는 잔인한 규정으로 신자들을 부당하게 자신들의 종교단체에 예속시키는 여호와와 증인의 행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입니다.
- . 존 로크는 고통을 가해 억지로 믿게하는 종교의 잘못된 행태는 사람의 양심마저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 이 pdf 문서를 통해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인권위가 이 문제에 개입해 꼭 시정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 시점에 이르러서까지
종교단체들 내부의 탈퇴자에 대한 가족단절과 같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잘못된 규정으로 고통받는 혹은 앞으로 고통받을 여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2018년 7월 10일

들어가면서

인권위는 이미 얼마의 사람들의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의 신자들과 탈퇴자들에게 저질러온 사회적 단절 그리고 가족단절이라는 비인권적 규정을 어느 정도 인지해왔으며 내부 논의까지 한 상태인 것으로 상담중 대화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위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면서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이 글이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인권위가 개입해야 할 이유까지 나름으로 열거하며 논증적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글은 여호와의 증인의 비인권적 규정과 피해자들 구제에 관한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 종교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반감때문에 이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출입부분의 둔덕때문에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문제까지 인권위가 개입할 정도로 인권위의 사려깊고 세심하고 감동을 주는 활동 하나만 고려하더라도 인권위의 존재와 활동은 매우 존중받을만하고 그 가치가 매우 큼니다.

하지만 이 진정서의 전체 내용과 같이 특정 부분에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들의 주관적인 분석과 판단이겠지만) 매우 소극적이거나 직무유기에 가까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인권위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도 이 글에서 일부 문제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면서 ----- 1
 진정서 요지 ----- 2
 차별 1 -----3
 차별 2 -----8
 차별 3 -----12
 근거자료들 -----17
 피해사례들 -----21

진정서 요지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단체가 신자였다가 자진탈퇴한 사람들에게 행해왔고 행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고발합니다.

인권 침해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오랜동안 내부적으로 시행해온 기존 신자들과 자진탈퇴자와의 사회적 단절 규정, 그리고 기존 신자가족들과 자진탈퇴한 가족구성원과의 죽을때까지의 가족단절 규정입니다.

여기서 죽을때까지란 탈퇴자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죽을때까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죽어가는 신자 어머니가 규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한 탈퇴한 아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신자 어머니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적 단절과 가족단절 규정은 대화, 만남, 식사, 집에 들이는 것, 인사, 이메일, 서신, SNS 등 모든 종류의 접촉 금지를 말합니다.(첨부된 근거자료들 1번과 2번을 읽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떤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가 결부되었는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명처분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사실상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제명처분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든지 두 집살림을 청산하지 않는다든지 마약을 상습투약한다든지 하는 등 도덕적인 부분이 일부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 기존 신자들이 접촉을 꺼려할 일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진정서에서 함께 언급하자면 전체적인 설명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는 이유로 이 진정서는 자진탈퇴자 문제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명된 사람에게 행해지는 사회적 단절 혹은 가족단절 규정이 문제없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피해사례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다가 제명되는 등 제명의 사유는 다양하며 또한 제명이든 탈퇴든 가족단절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한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 역시 추방하더라도 추방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것은 정치, 사회와 대부분의 종교단체 모두에서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명되었다고 해서 가족을 단절시키는 규정 역시 명백히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차별 1

종교의 자유란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아예 종교 자체를 그만둘 수 있는 기본권, 자유권, 천부인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언급된 헌법과 그에 따른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탈퇴하는 행동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커녕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매우 당연한 자유와 권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아닌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는 규정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가 그런 비인권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규정은 대한민국내에서 받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명백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단체가 자진탈퇴자를 기존 회원들과 똑같이 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종교, 문화 그 어떤 단체에서도 자진탈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기존 회원가족을 단절시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을 시행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 탈퇴할 경우, 그냥 그 단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단체회원으로 있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여러 자격이나 직위나 권리나 혜택이나 특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만남, 가족간의 교류, 가족관계, 가족간의 공동체 생활은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어진 기회나 특권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본권이며 자유권이며 천부인권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그 단체 회원인 가족들에게 친 가족인 탈퇴자를 만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할 권한 자체가 그들에겐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 단체가 소유했던 것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관련된 사람들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매우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살인죄로 교도소에 갇혔다 한들, 정부가 그는 나쁜 사람이니 가족들이 서신은 물론이거니와 면회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종교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어떠한 잘못도

아니며, 매우 당연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일뿐입니다. 또한 어떤 종교에 가입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혹은 종교 자체를 그만 두는 행위는 한 개인이 가치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행로를 수정해가며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매우 소중한 가치있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자유권입니다.

도대체 어떤 단체가 어떤 이유로 기존 회원들이나 회원가족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유로운 의사로 탈퇴한 그 탈퇴자를 만나지 말라는 규정으로 못만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이같은 규정은 명백히 타인의 자유권과 기본권인 인권을 매우 과도하고 심각히 침해하면서까지 신자들을 자신들의 종교단체 예속시키려는 조직범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가입했고 실효성이 있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줄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에서도 사람을 예속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8조 2항

여기서 예속이란 말은 부당한 규정에 지배받거나 얽메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하고 그만두면 될 것 아닌가? 또한 북한주민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하고 그만둘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고 반문할 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위가 최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일부 기업들의 인권에 반하는 갑질문화나 그 밖에 여러 사회나 직장 현장에서 당하는 인권피해자들의 구제요청에 회사나 단체를 그만두면 될 것 아닌가?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가족단절이라는 비인권적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과 이 탈퇴한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로 장로 직위를 박탈당한다든지 또한 탈퇴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잘못된 규정에 얽매어 힘들어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는 왜 그런 되물음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후자에게 그런 되물음이 허용된다면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탈퇴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비인도적이고 인권에 반하는 잘못된 규정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마음대로 탈퇴도 못하고 그 단체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말이 유엔 자유권 규약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이 ‘예속’ 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7조에서는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매우 당연한 자유와 권리인 탈퇴행위를 한 탈퇴자들에게 행한 가족단절 규정은 자유권 규약 7조가 말하는 “비인도적인” “취급”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탈퇴자에 대한 가족단절 규정은 사실 북한이나 조직폭력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르긴 해도 조폭들에게도 그런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의 자진탈퇴자에 대한 가족단절 규정과 시행 역시 인권위가 개입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명백한 차별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증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인권위가 반복해서 상거래에서 특정 종교인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차별행위와 여호와의 증인의 가족단절 문제는 다르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계시니 논증으로 접근해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상상도 하기 어렵겠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커피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명백한 차별 문제로 인권위는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타벅스의 그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 것은 헌법과 법률상 어떠한 잘못도 아니며 보편적인 일상생활과 상거래에서 차별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신자였다가 자진탈퇴한 사람을 대하는 규정은 인권위가 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의 규정은 커피판매거부 수준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기존 신자 가족들이 탈퇴한 가족을 못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가 탈퇴한 아들을 못만나게 하고 형이 탈퇴한 동생을 못만나게 하고 아버지가 탈퇴한 딸을 못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륜에 반하고 비인도적이고 인권에 반하고 상식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종교를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위반하고 있으며, 비난의 소지가 큰 것입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을 자진 탈퇴한 사람은 스타벅스의 차별로 커피를 사마시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와 어쩌면 인생

행로에서 현명한 결정을 행사한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인권위는 스타벅스에서 차별로 커피를 사마시지 못한 경우,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대한 종교적 차별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이 가능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탈퇴자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특정 종교의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문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해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가 무엇이든 믿던 종교를 보편적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타벅스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는 차별보다 사실상 훨씬 더 광범위하며 중대한 문제입니다.

스타벅스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단지 커피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규정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탈퇴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탈퇴했다는 죄로 애초에 자신들 소유도 아닌 가족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닙니까?

탈퇴자들이 물론 형식상 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단위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중산층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형태를 갖춘 단체나 그룹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을 잘못 펼쳤을 경우, 어떤 그룹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탈퇴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단체나 그룹은 아니지만 국가가 종교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종교 단체에서 탈퇴하는 탈퇴자 그룹으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의 규정은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전체 탈퇴자 그룹에 대한 차별 문제로 얼마든지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탈퇴자 그룹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여전히 부족하다면 국가는 계속해서 종교단체들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 부분에 있어 자유를 침해받거나 제약받는 우리 국민들이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합니까? 인권위입니다. 이 일을 등한시하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모르쇠로 외면한다면 국가의, 인권위의 태만과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엔 자유권 규약 제2조 3항엔 그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위가 골치아픈 종교문제라며 끝내 이 문제에 개입을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엔 종교의 자유가 아직 충분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자들을 선점한 그 어떠한 종교단체라도 신자가 탈퇴할 경우 기존 신자들과 기존 신자가족들이 탈퇴한 신자와는 죽을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못하게하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서 신자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위는 그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그것은 종교단체들의 그 같은 규정과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인권위는 방송사에까지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골치아픈 종교 문제엔 개입하지 않으려합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은 알아서들 종교를 잘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가족단절 규정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자 개인적 소송으로 알아서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게 소리같지만 사실 이것이 현재 인권위가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민원인들에게 해명해온 내부의견이고 그것은 인권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이라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인권의 민낯이 된 실정입니다.

차별 2

어떤 사람이 다녔던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종교지도자나 종교내부의 실제행태나 인간관계에 크게 실망해서 일수도 있고, 뒤늦게 종교교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일수도 있고, 군대안가는게 평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폭압적인 정권이 지배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대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불행한 사태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내 가족과 내이웃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종교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일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 수도 있고, 종교보다는 철학적인 삶이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종교단체를 탈퇴하는 행위는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인생의 자연스런 하나의 과정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물론 개중엔 종교가 안겨다주는 도덕적 의무를 지켜나가기가 버거워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를 탈퇴하는 사유들을 고려해볼 때, 탈퇴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을때까지 못만나게 하는 규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잘못이 아닌 그와같은 행동과 결정인 자진탈퇴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만나는 경우 기존 여호와의 증인 신자나 신자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 이 경우는 인권위가 명백히 차별로 판단했고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인권위 상담자와 전화상담 대화과정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보다 자세한 자료나 실제 사례를 전달받지 못해 인권위가 이 부분에 있어 개입할 근거와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못한 것은 사실상 지금껏 대체로 소극적이었던 피해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은 인권위 진정과정에서 자신의 신분노출로 행여 기존 신자로 있는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 걱정되어 그래왔던 것이니 이해못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신자나 신자인 가족이 규정을 어기고 자진 탈퇴자를 만나거나 접촉하는 경우,

장로직을 박탈당합니다.

봉사의 종(집사) 직을 박탈당합니다.

한 달에 수십시간씩 전도봉사할때 주어지는 타이틀인 정규 혹은 보조파이오니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회중집회는 공개강연, 파수대 집회, 신권전도학교, 봉사회, 서적집회 5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신권전도학교는 신자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돌아올때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하고 평가를 받는 형식인데 가족단절 규정을 어긴자들은 연설 자격이 박탈됩니다.

파수대 집회와 서적집회는 각각 정기간행물(북한 노동당 기관지 같은, 왜 이것에 비유하는지 근거 자료들 1 부분 참조)과 서적을 짧게 짧게 낭독자가 낭독하고 사회자가 질문하면 청중이 그 낭독내용 중에서 답을 찾아 답변하는 형식인데, 규정을 어기고 탈퇴한 가족을 만나는 신자 가족들은 사회나 낭독이나 답변에 참여하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봉사회 집회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식인데 여기엔 지명되어 사전 준비된 신자들 한 두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 짜여진 대로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 기회만 박탈당할뿐만 아니라 입소문으로 다른 신자들은 그 사람과의 교제나 접촉을 꺼려하는 왕따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의 규정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매주 반복되는 여러 집회와 각종 간행물을 통해 불순종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기고 자진탈퇴한 가족을 만나는 사람은 자연히 왕따가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승진 코스가 있습니다. 말단 신자에서부터 봉사의 종(집사) 장로, 순회감독자, 지역감독자, 한국 지부 위원까지 혹은 미국 본부의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은 상당히 여러 단계이며 많은 발판의 사다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탈퇴자를 만나는 신자나 가족은 말단 신자에 머무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꿈은 아예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이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중 지방회중의 장로직의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회중 장로로서 평신자들 앞에서 누리는 프리미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들은

월급같은게 없습니다. 다들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고 무보수로 회중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상당한 스톡옵션이 주어집니다. 이 스톡옵션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머지않아 오게될 아마겟돈 재앙을 살아남아 이 땅에서 다른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넓은 토지를 분배받고 광활한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군왕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된 기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명백한 실체” (히브리서 11:1)라고 정의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관념적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 스톡옵션이 그야말로 “보증된 기대”요 “명백한 실체”로, 그들은 머지않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것을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자신들이 세상의 군왕들로 지배하게 될 세상이 눈 앞에 이른 거대한 혁명의 전야입니다. 정기적인 간행물과 집회에서는 “올 해가 마지막 봉사년도가 될까요”라는 아마겟돈이 마치 곧 올 것처럼 분위기를 잡는 문구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때문에 이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시키는 온갖 종류의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장로 가족중 누군가가 탈퇴를 했는데, 장로가 혈육의 정을 못뉘어서 규정을 어기고 탈퇴한 아들을 만나게 되면 장로직을 박탈당합니다. 탈퇴한 자식의 결혼식에 가서 부모노릇을 해도 장로직을 박탈당합니다.(첨부된 근거자료들 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된 각종 직위나 특권은 바로 이 3번 자료에서 언급된 규정에 근거해 박탈되게 됩니다. 조직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왕따 교육은 늘상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 장로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지방회중의 장로들에겐 엄청난 스톡옵션을 상실하는 것으로 심각한 것이며 커다란 손실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탈퇴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잃게 되는 여러 직위와 특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들은 탈퇴한 가족을 만나거나 탈퇴한 자식의 결혼식에 가는 대신에 장로직 유지를 선택합니다. 큰 스톡옵션 앞에서 생이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탈퇴한 가족이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인권위도 이 정도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겠지만 대체적인 내용으로도 판단했듯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탈퇴하는 행동은 어떠한 잘못도 아니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탈퇴한 가족을 만나는 행위 역시 일말의 잘못일 수 없기 때문이며, 애초에 탈퇴한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여호와의 증인 규정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에 반하며 과도하고 잔인하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위도 차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왜 차별인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논증을 한 번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아 언급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커피 판매를 거부하게 하는 규정을 어떤 직원이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커피를 판매했을 경우 스타벅스는 그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지역책임자는 커녕, 점장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물론 가상의 예를 든 규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상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 것은 어떠한 잘못도 아니며 여호와의 증인에게 커피를 판매했던 행위가 불이익을 통해 차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위는 이 부분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태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아버지나 형이나 어머니가 헌법과 법률상 그리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인생행로의 결정에 있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랑하는 자진탈퇴자 아들이나 동생이나 딸을 만난다는 이유로 앞서 언급한 여러 내부의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규정 역시 인권위가 차별 행위로 간주하며 충분히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종교에 잘못 물든 특정한 매우 특이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종교 단체에서 탈퇴하는 탈퇴자 그룹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분류한다면 말입니다.

차별 3

스타벅스의 가상의 예나 정부나 일반 사회단체들과는 달리 종교 문제는 특수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나 성경과 같은 경전이 물론 존중받아야 할 부면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국가는 헌법의 가치아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천부인권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식과 원칙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8조 3항에도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 18조 3항

다시 말해 종교 교리나 활동과 같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국가는 이런 경우 개입해서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지켜줘야 하고 또 국제협약상으로도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공중화장실 둔덕이 높아서 장애인 출입이 불편한 문제까지 차별이라며 개입하는 마당에 정작 종교분야 만큼은 사안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계속 개인이 법에 호소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회피성 경향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이 부분에 있어 종교단체 탈퇴자 계층, 탈퇴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성가신 문제에 개입않으려는 인권위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다 세심하게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일을 할 적합한 국가기관은 인권위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이와같은 사고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역사와 선각자들과 희생자들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떤 긴 여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와 일반사회가 종교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난지가 언제인데, 명백한 종교단체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종교의 눈치를 살피며 여전히 힘없는 개인이 큰 종교단체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이와같은 인권위의 태도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역사와 인류앞에 전혀 예의가 아니며 주객이 전도된 것 (카눗사의 굴욕) 입니다.

국가가, 인권위가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듣지않으면 과징금을 계속해서 메기거나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법정에 세워서 법에 따른 형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 (아비뇽의 유폐) 해야 합니다. 소송은 종교단체가 국가와 인권위를 상대로 억울하다며 읍조리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우리 시대에 바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인권위가 왜 이렇게 종교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종교적 부분은 종교단체들이 큰 소리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없는 것이구요. 하지만 종교단체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 선제조치에 대한 프리미엄은 국가와 일반사회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자유와 인권을 시저의 것, 다시 말해 국가와 인권위와 일반사회의 것입니다. 부디 인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정한 시저의 것에 대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철학을 완성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로크는 자신의 저서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정치권력이든 종교권력이든 종교나 교리를 강제하며 억지로 믿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고통과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예배행위를 하게해서 한 개인의 양심을 스스로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단절과 같은 고통과 압력때문에 하는 억지 종교생활은 하느님도 좋아하실리 없으며 신에게나 본인에게나 무의미한 것인데 그런 잘못된 상황을 조장하는 죄입니다.

존 로크는 그 저서에서 종교의 탈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 어떤 교리상의 오류나 예배 형식의 불일치를 발견한다면, 자유롭게 그가 [교회에] 들어간 것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출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 공진성 옮김 책세상문고, 교보문고 전자책 18% 부분, 소제목 (2)교회 부분 중에서 (전자책으로 밖에 구할 수 없었음, 전자책이라 페이지를 특정할 수 없어 대략 위치를 18% 부분으로 명기하였음)

많은 선각자들의 리더십과 투쟁과 희생이 초래되는 가운데, 오랜 과도기적인 기간과 여러 상황을 거쳐왔지만,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많은 나라들에서는 결국 존 로크가 정립한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종할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탈퇴하고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자체가 큰 가치와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엔 대한민국 헌법과 그에따른 법률이 보장하는 그런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규정은 종교의 자유의 원래 취지를 크게 벗어난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잔인한 인권유린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는 다른 종교들에서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그 종교들의 규정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종교적 박해라고 간주하고, 탈퇴하려는 자신들의 신자에게 가하는 가족단절같은 비인권적 규정은 사랑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원래 미국에서 한 때 집총거부로 박해를 받았던 종교였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헌법과 국제협약에 언급된 인권보호 조항으로 크게 혜택을 봐왔던 종교입니다. 최근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것도 여호와의 증인측이 끊임없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관련된 유엔 자유권 규약을 언급한 측면이 큼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정작 자신의 신자들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 자유권 규약의 일부 조항들을 무시하는 비인도적이고 매우 잔인한 인권유린 규정을 오랜동안 시행해온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탈퇴자들에 대한 기존 신자들과의 인간적 사회적 단절, 그리고 죽을때까지 기존 신자 가족과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가족관계의 단절 규정(근거자료 참조)입니다.

시골이나 지역 가톨릭 신부나 개신교 종파 목사들이 한 때,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면서 증인들이 찾아오면 말도 하지말고 문도 열어주지말고 더더욱 집에 들이지 말라며 신자들을 독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도 가톨릭이나 개신교 종파들이 그 규정을 어긴 신자들에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줬다는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성경에 정말 여호와의 증인의 비인권적 규정이 나와있는지 의문이지만, 설령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규정이 나와있다해도 국가는 헌법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싸워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의 가치 아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일을 하도록 국민으로부터 책임과 세금을 위임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월급받고 해야 하는 일에는 이 진정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부디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제1조 1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여기서 “자결권”, “자유로이” 라는 단어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가입과 개종과 탈퇴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2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의사의 종교단체 탈퇴자 그룹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들을 존중받고 국가가 그 자유와 권리들을 확보해줘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방송사에 난입하여 난동을 피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언론과 방송사들마저 종교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방송사나 공공기관에 난입해 난리를 피우는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 병역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증인은 시위 난동을 부리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평화적이고 질서있

게 법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외부적으로는 비교적 지성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니 우선 인권위가 제기된 비인권적인 여호와의 증인의 가족단절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인권위에 그와같은 소요사태나 어떤 불똥이 튈 걸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는 점을 100퍼센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혹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해서 인권위가 망설이거나 물러서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제2차 종교개혁에 가깝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것으로 알아왔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국제규약을 내세우며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했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과 신자들에게 가하는 비인권적인 규정이 오랜동안 지금까지 버젓이 아무렇지 않은 듯 내버려져 온 이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종교를 선택하고 개종하고 그만두는 행동은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제약을 받거나 그 누구도 제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상식을 천명하는 기회가 되어 모든 국민, 특히 음습한 종교적 환경에서 마음대로 종교를 탈퇴하지도 못하고 신음하거나 종교를 탈퇴했다고 해서 가족과 죽을때까지 생이별을 해야하는 말도안되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혹은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누리는 국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그와같은 비인도적이고 인권에 반하는 잘못된 규정으로부터 국가가 우리 국민 개개인을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시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는 종교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에 맞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종교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보다 섬세하게 업그레이드하여 확립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은 훨씬 격상될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인권위는

그에 따른 명성과 함께 국제인권상을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업그레이드된 인권환경을 또 하나의 한류로 전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하고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홍익인간의 이념에도 지극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종교 교리와 활동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만들 상상조차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일곱째, 종교의 자유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존 로크와 같은 선각자들과 평화적으로 투쟁하다 화형에 처해져 양심이 인권이 되게 한 시발점이 된 미카엘 세르베투스같은 희생자들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며 전진해왔던 역사와 인류 앞에 물론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당 수준의 공기와도 같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정부와 인권위는 그나마 고개를 조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자료들

1) 파수대

〈파수대〉지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아마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파수대〉지를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관보같은 것으로 전체 집단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나 엄중한 존중심을 가지고 각항을 낭독을 하고 사회자가 그 관보에 적힌 질문을 하면 그 관보내에서 집단성원들이 손을 들어 발표하는 그런 기관지는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지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밖에 없을 것 같기에 하는 말입니다.

〈파수대〉지는 원래 하나로 발행되다가 일반에 어려운 종교적 내용으로 인해 좀 쉽게 작성한 일반 배부용과 좀 더 종교적인 내용의 신자들 교육용 두 가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용 〈파수대〉지는 매월 발행되고 있으며 각 호마다 대략 서너개 정도의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단지 지식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파수대〉지의 내용 기사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신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며, 그것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는 일종의 지켜야 하는 법과 같습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여호와의 증인 본부 운영자들의 신자들에게 지시하는 강제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하려는 신자들에게 〈파수대〉지의 기사에서 언급되는 규정과 원칙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둘 생각이라면 또 모를까

참고로 〈파수대〉지는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www.jw.org)에서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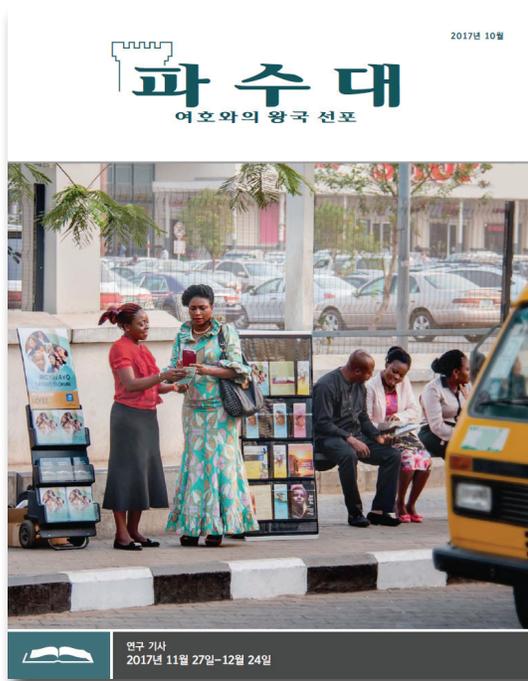
그럼 여기서 진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수대〉지 2017년 10월호 세번째 기사 중 16페이지 19항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제명된 신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최신 규정이 나옵니다.

명기된 문제의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된 가족 성원과는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로도 일상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처음보시는 분들은 위 내용에 제명자에 관해서만 언급되었지 탈퇴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하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리는 〈조직〉책 내용에서 위 규정이 왜 탈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 후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 73: 16, 17) 우리도 충실하게 여호와를 숭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9 **여호와의 징계에 존중심을 나타내십시오.** 여호와의 징계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2: 11 낭독)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는 어울리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5:11-13)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명된 가족 성원과는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로도 일상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결국 그분께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고린도 전서 13:7)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가 성경

실제 교육용 <파수대> 2017년 9월호 표지와 문제의 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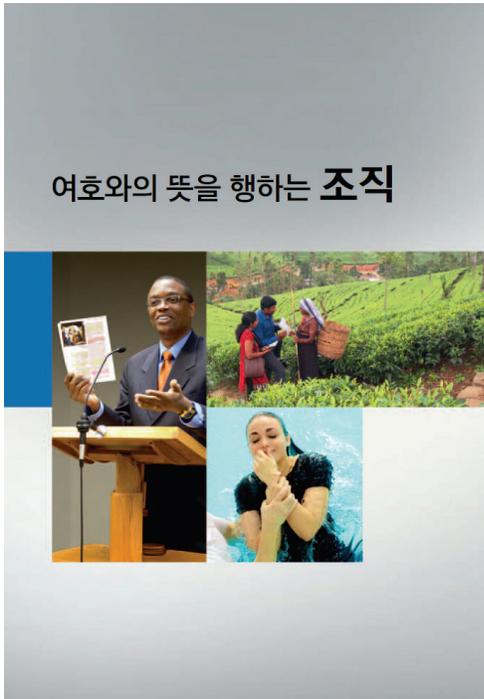
2. <조직>책

원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조직’ 이지만, 신자들은 간단히 줄여서 ‘<조직>책’ 이라 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정식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직>책은 여호와의 증인의 정식 신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침례받기 전에 반드시 학습해서 익혀야 하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켜야 하는 규정같은 것들이 세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제명자와 탈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 142 페이지 33항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다시 말해 어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스스로 이탈(탈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은 제명된 사람과 동일하게 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탈퇴한 사람 역시 제명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존 신자들이나 탈퇴한 사람의 신자 가족들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이메일, 소셜미디어로도 일상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안되는데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집에 들이는 등 일상적인 가족관계는 더더욱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조직

³³ 누군가가 이탈할 경우, 여호와 앞에서 그의 입장은 야외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무활동자와는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활동이 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문제나 박해를 겪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려는 열심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과 회중 성원들은 무활동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영적 도움을 계속 베풀 것입니다.—로마 15:1; 데살로니가 전서 5:14; 히브리 12:12.

³³ 그와는 달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이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중에 알리기 위해 “[____ 씨]는 더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라고 간략하게 광고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제명된 사람과 동일하게 대할 것입니다. 장로의 회 조정자가 이 광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복귀

³⁴ 제명된 사람이나 회중에서 스스로 이탈한 사람이 회개의 뚜렷한 증거를 보이고 죄의 행로를 버렸음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나타낸다면 복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갖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명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장로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직>책 표지와 문제의 내용 부분

여기서 이탈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탈퇴를 의미합니다. 왜 일반적이고 쉬운 용어인 ‘탈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탈’ 이란 용어를 고집해왔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마 아무런 문제없고 중립적인 용어인 ‘탈퇴’ 라는 용어보다는 ‘이탈’ 이란 용어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그만두는 행위에 대해 모자라고 부정적인 죄의 이미지를 던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상식과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탈’, ‘이탈자’ 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워 남아있는 신자들이 탈퇴한 사람을 죄인취급해서 기피하게 만들고 탈퇴한 사람은 탈퇴한 사람대로 ‘이탈자’ 라는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이탈했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을 안하겠다는 공식선언으로 탈퇴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측에 자술서 등의 형식으로 명확히 알립니다.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는 행위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만큼 가볍고 쉬울 순 없겠지만, 탈퇴하면 더 이상 그 사이트의 정식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듯이 그 종교단체 신자로 있었을 때 받아왔던 직위나 특권과 혜택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그 종교단체가 제공한 특권이나 혜택이 아니라, 그 종교 이전에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누려왔던 천부인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양떼를 치십시오>책

정식 제목이 ‘하느님의 양떼를 치십시오’ 라는 이 책은 여호와의 증인 지방 각 회중의 장로들이 신자들을 다루고 대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장로들에게만 주어지고 교육되어지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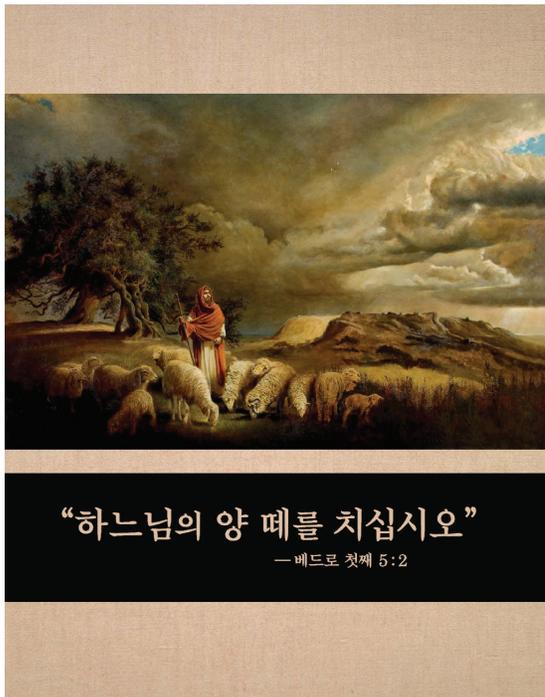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이 소규모 단위로 모여 집회를 보는 집단을 회중이라 부르고 그 회중이 모여 집회를 보는 장소는 왕국회관이라 부릅니다. 이 소규모 회중들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중내에 장로로 임명된 사람들이 3명에서 많게는 10명, 혹은 10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크게 하자가 없고 어느 정도 연륜과 경력에 이르면 장로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그 중 리더격인 장로를 회중조정자라 부릅니다.

이 책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 장로와 신자들이 탈퇴한 가족과 일절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앞서 소개드린 정기 기관지 <파수대>지와 조직이란 책자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탈퇴한 가족을 만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원칙과 규정이 나옵니다.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 성원이 한 집에 살지 않는 제명되거나 이탈한 친족과 부당한 교제를 할 경우, 장로들은 그 회중 성원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조언해 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면에서 제명처분 명령의 취지를 거스르고 조언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본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회중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탈퇴한 사람이나 탈퇴한 가족을 만나면 장로직 등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장로직을 박탈당합니다.



지역에는 그런 교통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나 안전 문제나 악천후 때문에 걸어서 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것처럼 절박하다면 장로들은 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81」 11/15 12면 14항) 제명되거나 이탈한 사람과 친근한 교제나 대화를 나누는 일만 없다면 그런 도움은 대중교통 마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둘째 10, 11) 어떤 마련을 하든 그러한 마련이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로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6. 회중 성원이 한집에 살지 않는 제명되거나 이탈한 친족과 부당한 교제를 할 경우, 장로들은 그 회중 성원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조언해 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책 207-208면, 「파수대」 1988년 4월 15일호 26-30면, 「우리의 왕국 봉사」 2002년 8월호 “친족이 제명되었을 때 그리스도인 충성을 나타내십시오”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그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면에서 제명 처분 명령의 취지를 거스르고 조언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본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회중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친족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고집하거나 제명 처분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한, 사법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떼를 치십시오>책 표지와 문제의 내용

여기서 “본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회중 특권” 들에 관해서는 진정서 본문 두번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드렸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스타벅스가 규정을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계속 커피를 판매하겠다는 직원이 승진은 커녕 스타벅스에 근무하는 한 말단 곳은 일만 하도록 하는 행위와 똑같은 차별입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는 탈퇴라는 자유와 권리를 행한 가족을 만나는 행동은 헌법과 법률과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하등 어떠한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규정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은 탈퇴한 자식의 결혼식에 가지 못합니다. 탈퇴한 자식의 결혼식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침례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도 그 결혼식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결혼식에 부모로서 참여하게 되면 장로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잔인하고 인권에 반하는 차별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의 규정이 이 책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침례받은 사람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탈한 사람이나 제명된 사람과 하는 결혼식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을 주재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 주례자가 주례사를 한 다음 법적 자격이 있는 다른 장로가 결혼 서약을 주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주재하는 장로가 필요한 서류를 온전히 작성할 것입니다. 주례사를 해 달라거나 결혼 서약을 주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장로는 그 일을 할 것인지를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97」 4/15 24면; 「파84」 7/15 22-23면) 장로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로들은 침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탈한 사람이나 제명된 사람과 하는 결혼식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첫째 5:11; 7:39) 결혼식을 한 뒤 여러 해가 지난 후 또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결혼식이 구속력이 없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파06」 10/15 19면 8항.

5. 장로는 주례를 승낙하기 전에 결혼할 두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재치 있으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구혼 기간 중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국 봉사」 2008년 11월호 7면, 「파수대」 2006년 10월

탈퇴한 자녀의 결혼식에 가면 안된다는 장로들이 지켜야하는 규정

사회 일반에 알려지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이런 부당한 차별규정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며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 오랜동안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해사례들

다음에 소개되는 여러 피해 사례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이며, 제보자 본인의 문제이거나 제보자가 명백히 듣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제보자들을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수준에서 피해자 조사에 응할 수 있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분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고 호응할 것입니다.

제보된 사례들을 옮기면서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호와의 증인 스타일의 언어는 순화시켰고, 세세한 부분까지 담긴 인생사에 관한 긴이야기는 진정서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제보자 분들에게 이 점 양해를 바라며, 인권위측에서 혹시 원본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사례는 탈퇴자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제명자에 대한 가족단절 사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제명자에 대한 가족단절 규정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했거나 제명되었거나 여전히 신자인 사람들이 일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드나드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여기 소개되는 내용들은 그 커뮤니티의 운영자 분들 중 한 분의 커뮤니티 내의 소통과 협조로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간다면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쪽에도 조사를 하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에 관한 또 다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카페 운영진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Daum)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정보카페’를 검색하면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afe.daum.net/christianfreedom

그럼 피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 경기도 부천시 김00씨. 현재 40대 중반. 20대때, 여호와의 증인 2세. 여호와의 증인의 한국지부 확장공사에 건축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한국지부의 민낯을 보고 환멸을 느꼈고, 그후 호주로 이주해 호주에서 교포출신 여호와의 증인 2세와 결혼했는데 호주에서 여호와의 증인 아동성추행 문제가 터지면서 더욱 크게 실망함. 여호와의 증인내에서 어느정도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입장과 제명 탈퇴자에 대한 가족단절 규정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탈퇴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거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건축자원봉사를 했던 당시 동료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는 이 김00씨가 연락해도 받지 말라는 단체 메시지가 뜬 것으로 봐서는 탈퇴를 한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으면 단절할 이유가 없음. 본인은 아니지만 증언해줄 사람 있음.

사례2) 서울 강북구 김00씨. 현재 30대. 여호와의 증인 미국본부가 UN NGO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을 동료 증인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와 여호와의 증인의 여러 회중들이 한곳에 모여 교육받는 대회회관에 설치된 헌금을 위한 카드 단말기가 예수당시 성전을 상행위와 돈거래로 오염시킨 것과 다를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국제연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머리에 열개의 뿔을 가진 혐오스런 짐승이 상징하는 조직이며 아마겟돈 심판때 멸망당할 것으로 오랜 동안 교육받아 왔는데 영국의 한 언론이 여호와의 증인이 뒤로는 국제연합의 NGO로 가입해 활동해온 것을 근거서류와 함께 폭로하는 바람에 적지않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탈퇴하는 계기가 되었음.)

제명된 누나도 있는데 어머니는 제명된 가족과는 일절 단절해야 한다는 여호와의 증인의 규정으로 인해 이 딸과 연락하지 않아왔음. 김씨는 어머니와 한 집에 살기때문에 매우 불편한 동거생활 중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증인의 기관지 <파수대> 2017년 10월호에서 제명자와는 모든 형태의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나오자 어머니의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분가함. 어머니의 종교적 입장때문에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음. 어머니는 규정때문에 김씨의 연락마저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왔음. 사실상 모자관계가 파탄남. 여호와의 증인이 초심자를 회유할때 자신들은 참종교라면서 참종교는 더 나은 어머니, 더 나은 자식을 만든다고 교육하면서 오히려 규정을 들어 기존의 가족관계를 파탄나게 함. 가족관계는 애초에 여호와의 증인이 맺어준 것이 아님.

사례3) 서울 동대문구 홍00씨. 침례를 10대때 받은 매우 촉망받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음. 오랜동안 강원도에서 전시간 전도인(특별 파이오니아) 생활을 하다가 교리와 부당한 승진 관례에 실망하여 중단하고 평신자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중, 2012년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본부에서 있었던 연례총회에서 겹세대론을 발표하는 걸 보고 환멸을 느끼고 탈퇴함. 겹세대론이란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목격한 세대가 다 죽기전에 아마겟돈 심판이 온다고 오랜동안 주장하고 신자들에게 믿음을 고무시켜왔는데, 100년이 넘도록 아마겟돈이 올 조짐이 보이지 않자, 1914년을 목격한 세대를 1914년을 목격한 세대와 그들과 함께 살았던 자녀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다 죽기전으로 변경한 것을 말함. 쉽게 말해 2,000년이나 늦어도 2010년 정도에 아마겟돈 환난이 왔었어야 했는데 이 겹세대론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겟돈 심판날을 넉넉하게 수십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음. 1975년의 빛나간 아마겟돈 예언의 복재판인 셈.

사례4) 서울 성북구 이00씨. 현재 나이 40대 중반.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출소 후 1~2년 여호와의 증인 생활하던중 이전에 사귀던 신자가

아닌 일반인 여자친구와 깊은 관계로 사귀다는 이유로 제명당함. 제명 이후로 10년 동안 부모와 연락도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삶. 여자친구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부모에게 돌아갔으나 부모가 다시 여호와의 증인을 하지 않는 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억지로 겉모양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살고 있음. 부당한 규정으로 양심이 침해된 사례.

사례5) 인천 남구 김00씨. 현재 나이 30대 초반. 서울권 대학 입학 후, 서울로 이주. 캠퍼스 근처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 다니던 차에 회중내의 다단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현실에 크게 실망함. 그 뒤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 2012년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본부 연례 총회에서 겹세대론이 발표되자 자신이 믿어왔던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에 굉장히 냉소적이 됨. 그러던 중 김씨가 소속 회중 장로들의 성매매혐의, 정부 보조금 불법 수령 등 비리를 모아서 한 장로에게 고발했는데 관련 혐의의 장로들이 김씨 제명처분에 혈안이 되어 실제 제명을 시도함. 결국 실제 제명이 되었는데 김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됨. 중간에 제명발표가 나자 여호와의 증인 부부인 김씨의 부모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거부하고 2017년 파수대 10월호 기사에 언급된 규정대로 아들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아버지는 동네 경비원으로 어머니는 다른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사례6) 이름을 밝히지 않은 30대 후반 남자. 연락은 가능. 여호와의 증인 3세로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 생활을 해오다 20세 무렵 회중내의 여러 실망스런 행태를 보면서 회의를 느낌. 자연히 여호와의 증인 종교 생활이 악화되다가 결국 다른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과는 달리 군복무를 하기로 결정. 자동적으로 탈퇴처리됨. 탈퇴자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환경이었는지 여호와의 증인인 홀어머니와 두 형은 휴가로 집에 왔을때에도 그리고 제대후에도 비교적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 복귀하도록 종용함. 형의 압력은 더 심해졌고, 결국 형은 이 동생이 다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의사가 없을 경우,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 분은 분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머니와는 가끔 전화통화는 하지만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 가족 전부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음. 이 분이 제보한 글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음.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하다가 그만둔 게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일까요?”